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
계 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 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,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·시행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인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
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
허용(안 제25조제1항제8호자목)
- 나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
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(안 제25조제1항제8호다목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. . . ~ .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6호라목에 8)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

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인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

1)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

2)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제품

3)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

제25조제1항제8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
조의2제1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한
디지털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	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·재 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 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경우	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 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 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 자로부터 제조·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 기간(주무부장관이 인 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	라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된 기간을 포함한다. 이하
이 목에서 같다) 이내에
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유효
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
는 6년으로 한다.

1) ~ 7) (생략)

8)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
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
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
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
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
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
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
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
품

7.·7의2. (생략)

8. 그 밖에 계약의 목적·성질
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
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
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
음 각 목의 경우

가.·나. (생략)

다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제7조의3제3항
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
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

-----.

-----.

1) ~ 7)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7.·7의2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
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
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
혁신제품으로 인정한 다

된 제품을 같은 조 제4항
에 따라 구매하려는 경우

라. ~ 바. 삭제
사.·아. (생략)
<신설>

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제품

1)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
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
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
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
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
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
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
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
품

2)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
제2호에 따라 상용화 전
시제품 중 초기판로 확
보 및 상용화 지원 필요
성이 인정된 제품

3)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
제3호에 따라 공공성과
혁신성이 인정된 제품

사.·아. (현행과 같음)

자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
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9조의2제1

② ~ ③ (생략)	<u>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</u> <u>전문위원회가 심사하여</u> <u>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</u> <u>계약하는 경우</u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783